

청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단7045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13.

##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721,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1. 12.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충북 진천군 C 전 24㎡, D 전 555㎡, E 전 156㎡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가 2021. 5.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21. 5. 11. 접수 제8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사고, 대위변제

- 피고 A은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11. 1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7,000,000원, 보증기한 2025. 10.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F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 A이 2021. 5. 11.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F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1. 9. 29. 피고 A의 채무 17,193,4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471,863원을 회수하여 구상금채권은 16,721,582원으로 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10%이다.

나. 재산처분

- 피고 A은 처인 피고 B에게 2021. 5. 10.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21.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A은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다툼 없음(위 가.항의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A에 대한 청구 판단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6,721,58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2. 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21. 9. 29.(원고의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 성립하였으나,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10.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의 채무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5. 11.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785 판결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 B는, 자신은 피고 A과 부부이기는 하나 사이가 좋지 않아 상호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A에게 생활비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피고 A이 자기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밖에 없다며 가져가라

하여 재산분할 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사이가 좋았을 때 피고 B의 돈으로 구매하였던 것으로 이를 증여의 방법으로 이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피고 A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위 증여의 경위가 피고 B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가 당시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가 선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